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 기간

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이용을 원하는 날부터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2. 계약 목적

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(보호자)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.

3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금액		내역
월이용한도	공단부담금	85%(일반)	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% 중 85~100%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
		91%(감경)	
		94%(감경)	
		100%(기초수급자)	
본인부담금	개인부담금	15%(일반)	보험공단이 85%이고 본인부담금임 15%임
		9%(감경)	보험공단이 91%이고 본인부담금임 9%임
		6%(감경)	보험공단이 94%이고 본인부담금임 6%임
		0%(기초수급자)	보험공단이 100%이고 본인부담금임 0%임

1)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2)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,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확인 서명 받는다.

가)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 (2026.01.01)

등급별 월 한도액 인상율	등급별 월 한도액 인상율		변경 전 월한도액(2025년)					
		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			2.306.400	2.083.400	1.485.700	1.370.600	1.177.000	657.400
			변경 후 월한도액(2026년)					
		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			2.512,900	2.331.200	1.528.200	1.409.700	1.208,900	676.320
	본인 부담	15%	376.930	349.680	229.230	211.450	181.330	101.440
9%		226.160	209.800	137.530	126.870	108.800	60.860	
6%		150.770	139.870	91.690	84.580	72.530	40.570	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4.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) 권리

-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.
- 기관에서 수집, 관리하는 수급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해 알 권리가 있다.
-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가 있다.
- 대상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.
-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-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.

2) 의무

-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.
- 방문요양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을 할 의무가 있다.
-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.
-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-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, 재산상의 분실,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5. 계약의 해제

-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- 방문요양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방문요양 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 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
-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-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-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
-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
-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
- 수급자가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서비스가 어려울 경우
- 기타 이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